

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5.6.1.>

직각좌표의 기준(제7조제3항 관련)

1. 직각좌표계 원점

명칭	원점의 경위도	투영원점의 가산(加算)수치	원점축척계수	적용 구역
서부좌 표계	경도: 동경 125° 00′ 위도: 북위 38° 00′	X(N) 600,000m Y(E) 200,000m	1.0000	동경 124° ~126°
중부좌 표계	경도: 동경 127° 00′ 위도: 북위 38° 00′	X(N) 600,000m Y(E) 200,000m	1.0000	동경 126° ~128°
동부좌 표계	경도: 동경 129° 00′ 위도: 북위 38° 00′	X(N) 600,000m Y(E) 200,000m	1.0000	동경 128° ~130°
동해좌 표계	경도: 동경 131° 00′ 위도: 북위 38° 00′	X(N) 600,000m Y(E) 200,000m	1.0000	동경 130° ~132°

비고

가. 각 좌표계에서의 직각좌표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T·M(Transverse Mercator, 횡단 머케이터) 방법으로 표시하고, 원점의 좌표는 (X=0, Y=0)으로 한다.

- 1) X축은 좌표계 원점의 자오선에 일치하여야 하고, 진북방향을 정(+)으로 표시하며, Y축은 X축에 직교하는 축으로서 진동방향을 정(+)으로 한다.
- 2) 세계측지계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으로 표시하되, 직각좌표계 투영원점의 가산(加算)수치를 각각 X(N) 500,000미터(제주도지역 550,000미터), Y(E) 200,000m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나.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리정보의 위치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각좌표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2.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 원점

명칭	원점의 경위도
망산원점	경도: 동경 126°22 ' 24". 596 위도: 북위 37°43 ' 07". 060
계양원점	경도: 동경 126°42 ' 49". 685 위도: 북위 37°33 ' 01". 124
조본원점	경도: 동경 127°14 ' 07". 397 위도: 북위 37°26 ' 35". 262
가리원점	경도: 동경 126°51 ' 59". 430 위도: 북위 37°25 ' 30". 532
등경원점	경도: 동경 126°51 ' 32". 845 위도: 북위 37°11 ' 52". 885
고초원점	경도: 동경 127°14 ' 41". 585 위도: 북위 37°09 ' 03". 530
울곡원점	경도: 동경 128°57 ' 30". 916 위도: 북위 35°57 ' 21". 322
현창원점	경도: 동경 128°46 ' 03". 947 위도: 북위 35°51 ' 46". 967
구암원점	경도: 동경 128°35 ' 46". 186 위도: 북위 35°51 ' 30". 878
금산원점	경도: 동경 128°17 ' 26". 070 위도: 북위 35°43 ' 46". 532
소라원점	경도: 동경 128°43 ' 36". 841 위도: 북위 35°39 ' 58". 199

비고

가. 조본원점 · 고초원점 · 울곡원점 · 현창원점 및 소라원점의 평면직각중횡선수치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, 망산원점 · 계양원점 · 가리원점 · 등경원점 · 구암원점 및 금산원점의 평면직각중횡선수치의 단위는 간(間)으로 한다. 이 경우 각각의 원점에 대한 평면직각중횡선수치는 0으로 한다.

나. 특별소삼각측량지역[전주, 강경, 마산, 진주, 광주(光州), 나주(羅州), 목포, 군산, 울릉도 등]에 분포된 소삼각측량지역은 별도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.